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54호로 2023년 11월 9일 우경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사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9조)
- 라.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11. 10. ~ 11. 15.):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내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설치 및 운영 등)는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현장지도·상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상위법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한 것임.

- 안 제6조(지원대상)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정함.
- 안 제7조(사무의 위탁)부터 안 제9조(위탁의 해지)까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센터의 운영평가 등)는 구청장에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의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함.

○ 검토 결과

- 영유아기 및 아동기는 식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식습관은 아이들의 성장,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본 조례안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의 식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56호로 2023년 11월 9일 우경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을 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을 통해 구민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민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11. 9. ~ 11. 14.):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민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에서 대상의 제한 없이 영등포구민 누구나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안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는 안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시 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추가함.

- **안 제5조(구민 등의 교육)제1항 및 제3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상의 표현을 정비하고,

- **안 제5조(구민 등의 교육)제2항제2호**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관내 학교 교직원”을 추가한 것이며,

안 제5조(구민 등의 교육)제2항제3호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로 변경함. 이는 응급장비 관리 책임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규정을 반영하여 변경한 것임.

안 제5조의2(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도록 명시함.

○ 검토 결과

- 심폐기능 정지 후 4분이 경과되면 뇌세포 손상이 시작되며 10분이 경과되면 심폐순환이 회복되더라도 뇌의 생명유지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됨. 그래서 심정지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하며 심폐소생술을 즉시 실시할 경우 소생 가능성이 2~3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본 안건은 심폐소생술 우선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2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교육인력의 자격)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4.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6.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